

## ◆ D-60 민사합의금 산정 사례

### 1) 상용근로자의 사망사고의 경우

#### 1.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손실액 산정 기초자료

- 1) 피해자 성명: 양 ○ ○
- 2) 생년월일: 67. 8. 25
- 3) 사고일: 98. 7. 16.
- 4) 소속 회사명: ××(주)
- 5) 담당 직무: 설치직
- 6) 1일 평균 임금: 57,355.82원
- 7) 정년: 55세가 끝나는날의 12월(2023.12.31- 1998. 7. 16=305개월  
305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: 196.5557
- 8) 보통인부 가동능력기간 : 2027.8.24 - 1998. 7. 16 = 349개월 (37,736원)  
349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; 215.1729
- 9) 본인과실율: 20%, 회사과실율 80%

#### 2. 피해자의 장래 손실액

- 정년까지의 급여손실액: 57,356원 x 30 x 196.5557 = 338,209,461원
- 정년까지의 퇴직금손실액 : 57,356 x 30일 x 15.9441(25년) = 27,434,693원
- 56세~60까지의 보통인부로 별수 있는 수입금 손실액  
: 37,736 x 22 x 18.6172 = 15,455,850원
- 일실수입 합계: 381,100,004원

#### 3. 생계비 공제

$$381,100,004원 \times (1-1/3) = 254,066,669$$

#### 4. 재해자 본인과실 공제(과실상계)

$$254,066,669원 \times (1-20\%) = 203,253,335원$$

#### 5. 정신적위자료: 40,000,000원 x {1-(20% X 6/100)} = 35,200,000원

#### 6.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예정액 : 238,453,335원

- ※ 유족급여일시금 81,445,520원 포함된 금액이므로 합의금 선지급시에는 유족급여일시금은 보험급여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회사측에서 수령하여야 하고, 합의시에는 피

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착수금 5,000,000원 및 통상 성공보수로서 이익가액의 20%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, 238,453,335원에서 ±10%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2) 일용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

### 1.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손실액 산정 기초자료

- 1) 사고개요: 1999년 6월 11일 15시 45분경 ○○건설(주) △△현장현장에서 호이스트 MAST 설치 작업중 추락사망함
- 2) 피해자 성명: 윤 ○○
- 3) 생년월일: 65. 8. 8 (34세) 4) 사고일 : 99. 6. 11. 15:45
- 5) 소속 회사명: ○○정공(주)
- 6) 담당 직무: 비계공(99.1월 시중노임단가: 66,531원)
- 7) 1일 평균 임금: 60,869.56(일당 70,000원)
- 8) 1999.6.11 ~ 60세가 끝나는 날(2025.8.7)까지 302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195.2321
- 9) 본인과실율: 30%, 회사과실율 70% (\*통상 판결례에서 추락재해의 경우3:7임)

### 2. 민사상 합의금액 산정

#### 1) 재해자가 60세까지 비계공으로 벌수 있는 수입금(일실소득)

$$66,531원 \times 22일 \times 195.2321 = 285,757,710원$$

#### 2) 본인 1/3생계비공제

$$285,757,710원 \times (1-1/3) = 190,505,140원$$

#### 3) 본인 과실공제

$$190,505,140원 \times (1-30\%) = 133,353,598원$$

#### 4) 위자료 : 40,000,000원 X 100% X (1-(30%× 60/100)) = 32,800,000원

국가배상법상에는 처 8,000,000원

$$자녀 4,000,000 \times 2 = 8,000,000$$

$$부모 4,000,000 = 4,000,000 \text{ 합계 } 20,000,000원임$$

#### 5)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예상 최대금액

$$일실수입금 133,353,598원 + 32,800,000원 = 166,153,598원임$$

### 3. 합의방향

위 금액은 피해자가 비계공이고 1일 평균임금이 60,869.56원을 가정한 최대치 임. 사망사고인 관계로 위 합의예상금액을 기준으로  $\pm 20\%$ 범위내에서 합의것이 바람직하고, 합의금 선지급후 산재보상금은 위임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산재법상의 유족보상은  $60,869.56\text{원} \times 1420\text{일분} = 86,433,980$ (유족급여일시금 79,130,428원, 장의비 7,304,347원임) 이중 이중 산재보상금을 제외한 금액 79,719,618원이며, 근재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1인 사고당 5,000만원을 상한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최대한 5,000만원을 근재보험회사에서 수령하고 나머지 29,719,618원은 사업주 부담분이 될 수 있습니다. (근재보험회사에 사고개요와 사고관련서류를 제출하시어 합의금산정요청을 하십시오)